

방재시험연구소 업무 안내

● 시험업무

◇ 수탁시험

의뢰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KS, JIS, BS, ISO, UL, ASTM 및 기타 소방안전관계법규 등 국내의 시험기준과 방법에 의한 시험업무 수행

◇ 국가대행시험

해양수산부, 국립건설시험소, 노동부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시험업무 수행

◇ 선급검사시험

영국 로이드선급협회(LR), 한국선급(KR) 등 국내외 선급의 인정검사시험업무 수행

● 연구업무

방재 및 위험관리분야의 전문적인 기술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, 분석하는 조사업무와 방화제품 등의 시험을 통한 연구개발업무 수행, 연구결과는 방재기술지 등 각종 간행물을 통해 산업계에 보급

● 인증업무(FILK마크 부여)

방화안전관련제품에 대해 국제수준의 품질인증기준(FILK Standard)에 따라 설비·재료·제품에 대한 성능검사와 품질관리에 대한 공장심사 실시, 적합한 경우 FILK마크를 부여하고 사후관리를 통하여 품질의 신뢰성을 보증하는 인증(認證)업무를 수행.

◇ 인증대상품목 : 소화기, 소화약제, 경보설비, 소화설비, 건축구조재 및 내장재, 방염물품, 기타 방화 및 안전관련 제품 등

◇ 인 증 효 과 : 제조자에게는 공신력 확보로 판매촉진 효과를, 이용자에게는 우량제품의 사용으로 재해예방과 보험료 할인 등 실질적인 혜택 부여

● 교육업무

안전관련종사자들에게 소방시설 및 건축구조재 등의 종합적인 방재기술교육 실시

◇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(일반 및 전문과정)

◇ 건축 방내화

● 용역업무

공장 등 대형건물의 종합방재대책 수립, 공동 시험연구, 조사연구, 시험기기 대여 등 각종 용역을 계약에 의해 수행

■ 국내·외 시험기관 지정 현황 ■

| 지정일자 | 지정내용 | 지정기관 | 지정일자 | 지정내용 | 지정기관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1987. 10 | 시험연구업무 공인기관 | 내무부 | 1993. 4 | 주택자재 품질검사기관 | 충청북도 |
| 1988. 3 | 선박용물건형식승인시험기관 | 해양항만청 | 1993. 5 | 주택자재 품질검사기관 | 경기도 |
| 1988. 9 | 내화성능시험기관 | 국립건설시험소 | 1994. 6 | 선급인정시험기관 | 영국로이드선급 |
| 1990. 3 | 방화성능시험기관 | 국립건설시험소 | 1995. 9 |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 | 공업진흥청(KOLAS) |
| 1990. 11 | 어선용품형식승인시험기관 | 수산청 | 1995. 10 | 방화문 및 차음구조시험기관 | 국립건설시험소 |
| 1992. 8 | 건설품질시험기관 | 국립건설시험소 | 1996. 3 | 선급인정시험기관 | 미국선급 |
| 1992. 12 | 위험물설비 내화시험기관 | 노동부 | 1996. 7 | 선급인정시험기관 | 프랑스선급 |